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권영희, 김경영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
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장인홍, 전병주, 전석기,
최 선, 최웅식, 한기영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의 별지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,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.

- 서울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사용하지 않고 앞 7자리만 기재하고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,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주민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,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주민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	행		개		정		안		
<p><별지제1호서식>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</p>										
징수 월일	징수자		체납자			우 측 표	생 략			
	직급	성명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	생년월일		
<p><별지제2호서식>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</p>										
납기	부과자 (제보자)		세 목	구 분	발 굴 자 원	납세의무자			우 측 표	생 략
	직급 (주소)	성명 (주민등록번호)			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
<p><별지제3호서식> 포상금 지급신청</p>										
신청자		우 측 표	생 략							
소속(주소)	성명			주민번호						
<p><별지제1호서식>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(포상금지급대상)</p>										
징수 월일	징수자		체납자			우 측 표	생 략			
	직급	성명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	생년월일		
<p><별지제2호서식>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지급대상)</p>										
납기	부과자 (제보자)		세 목	구 분	발 굴 자 원	납세의무자			우 측 표	생 략
	직급 (주소)	성명 (주민등록번호)				주소	성명	주민등록번호		
<p><별지제3호서식> 포상금 지급신청</p>										
신청자		우 측 표	생 략							
소속(주소)	성명			주민번호						